

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4-91호

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4년 8월 14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- 공고사유: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- 공고기간: 2024. 08. 14. ~ 2024. 08. 27.
- 공시송달 대상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	윤성호	1983.○.03.	0178200274100004652	₩4,720,000	서울특별시 관악구 서림길 ○○
2	김재현	1968.○.08.	0178200274100004755	₩15,930,000	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26번길 ○○
3	송건	1979.○.25.	0178220274100003926	₩16,000,000	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113번길 ○○
4	변흠구	1979.○.14.	0178200274100004710	₩18,000,000	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7길 ○○
5	박상식	1981.○.25.	0178200274100004739	₩18,000,000	경상북도 문경시 안마2길 ○○
6	전종수	1976.○.23.	0178200274100004436	₩18,000,000	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작괘들길 ○○
7	김영명	1968.○.24.	0178200274100000456	₩19,116,000	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북5길 ○○
8	김정숙	1959.○.20.	0178200274100003521	₩19,116,000	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376번길 ○○
9	신현숙	1974.○.05.	0178200274100000272	₩22,302,000	울산광역시 중구 병영성4길 ○○
10	변서준	1979.○.18.	0178220274100003943	₩26,700,000	경상남도 의령군 화정면 대화로 ○○
11	조경순	1976.○.01.	0178200274100003591	₩31,860,000	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남로 60번길 ○○
12	강정혁	1972.○.14.	0178200274100003601	₩31,860,000	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8번길 ○○
13	최인수	1968.○.13.	0178200274100004437	₩31,860,000	경상남도 창원군 이방면 이방로 ○○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4	유범수	1983.○.23.	0178200274100004749	₩31,860,000	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823번길 ○○
15	김성민	1977.○.04.	0178200274100003605	₩31,860,000	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가촌동4길 ○○
16	정기홍	1966.○.03.	0178200274100004752	₩47,790,000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보광로 ○○

4. 문의: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 (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, 605호, ☎ 051-967-1204)
5. 공고내용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6. 납부방법: 인터넷지로(giro.or.kr) 또는 NTR POPCON(ntrpopcon.go.kr), 모바일앱(NTR POPCON)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(수납기관 :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)
7.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
- 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- 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.
- 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- 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